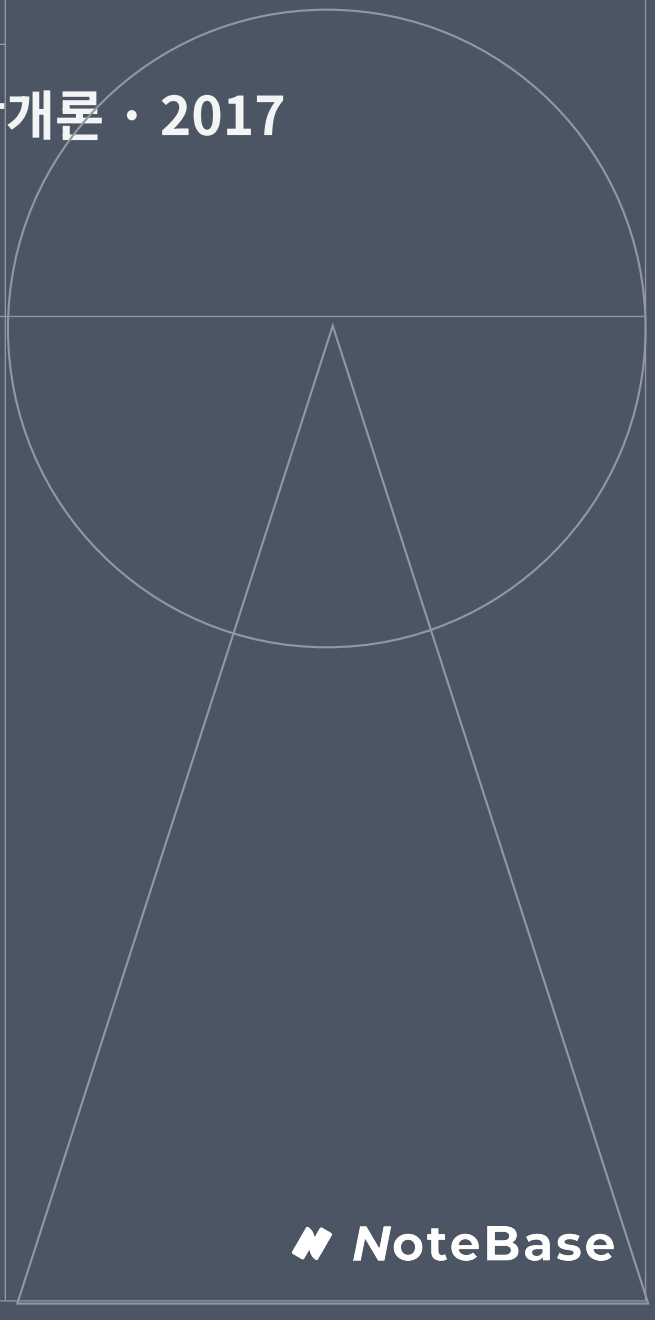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경호학개론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경호학개론 · 2017

공무원/국회직/9급 · 경호학개론 · 2017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테러 사건대책본부의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부장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
② 국방부장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
③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
④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
⑤ 경찰청장: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상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주체와 담당 분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국외·군사시설·항공·해양·국내일반 테러별 소관 기관을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테러사건대책본부는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 테러 유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응 조직이다.

핵심 구분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 경찰청장은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해양테러의 설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외교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므로 옳다.
② O —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므로 옳다.
③ O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므로 옳다.
④ X —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라는 연결이 틀렸다. 올바른 표현은 '해양경찰청장: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이다.
⑤ O — 경찰청장은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해양’이라는 단어만 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을 고르기 쉽지만, 해양테러사건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의 설치 주체는 해양경찰청장이다. 소관 분야의 명칭과 부처 이름을 단순히 연결하면 ④의 함정에 빠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테러 유형을 국외·군사시설·항공·해양·국내일반으로 나눈 뒤 각각
외교부·국방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경찰청의 순서로 대응시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국외-외교, 군사시설-국방, 항공-국토교통, 해양-해양경찰, 국내일반-경찰로 연결한다.

NoteBase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호제도 변천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① 경무대경찰서 → 청와대 경찰관파견대 →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

②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 → 청와대 경찰관파견대 → 대통령경호실 → 경무대경찰서

③ 대통령경호실 → 청와대 경찰관파견대 → 경무대경찰서 →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

④ 경무대경찰서 →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 → 청와대 경찰관파견대 → 대통령경호실

⑤ 청와대 경찰관파견대 →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 → 경무대경찰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한 조직이 시대에 따라 변천한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경무대경찰서 — 정부 수립 초기 경무대의 경호를 담당한 조직이다.
2. 청와대 경찰관파견대 — 경무대경찰서 다음 단계의 경호 조직이다.
3.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 —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에 의장 경호를 담당한 조직이다.
4. 대통령경호실 — 이후 대통령의 전담 경호기관으로 설치된 조직이다.

전체 흐름은 '경무대경찰서 → 청와대 경찰관파견대 →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이다. 각 조직은 해당 시기의 정치·행정 체제 변화에 따라 앞 조직을 이어 등장하므로 이 선후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경무대경찰서에서 시작하여 청와대 경찰관파견대,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를 거쳐 대통령경호실로 이어지는 올바른 변천 순서이다.

② X —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 → 청와대 경찰관파견대'와 '대통령경호실 → 경무대경찰서'의 선후가 뒤바뀌었다. 올바르게는 '경무대경찰서 → 청와대 경찰관파견대 →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이다.

③ X — 가장 뒤에 등장한 대통령경호실을 맨 앞에 두고, 초기 조직인 경무대경찰서를 그 뒤에 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경무대경찰서가 맨 앞이고 대통령경호실이 맨 뒤이다.

④ X —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 → 청와대 경찰관파견대'로 배열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청와대 경찰관파견대가 먼저이고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가 뒤이다.

⑤ X — 청와대 경찰관파견대보다 앞선 경무대경찰서를 맨 뒤에 놓은 부분과 대통령경호실을 그보다 앞에 놓은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경무대경찰서가 맨 앞, 대통령경호실이 맨 뒤이다.

오답 포인트

'청와대'라는 명칭 때문에 청와대 경찰관파견대를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보다 뒤의 조직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중간 순서는 청와대 경찰관파견대가 먼저이고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가 나중이다. 또한 경무대경찰서는 출발점, 대통령경호실은 마지막 단계라는 양 끝을 먼저 고정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초기 조직인 경무대경찰서와 전담기관인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처음과 끝에 고정한다. 그 사이에는 청와대 경찰관파견대,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의 순서로 배열한다.

암기 포인트

경무대 → 청와대 파견대 → 재건최고회의 의장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의 순서이다.

NoteBase

3. 국회 경위의 직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청인은 경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의 명을 받아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③ 방청인은 국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경위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④ 경위는 국회회의장 안에 있는 현행범인 의원을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⑤ 방청인은 경위가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회 경위가 방청 질서를 유지하고 국회 안의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적용되는 권한과 절차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방청인에 대한 경위의 조치와 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의 체포 요건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현행범인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뜻한다. 국회 안의 현행범인은 경위나 경찰공무원이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의장 안의 의원에게는 별도의 제한이 적용된다.

핵심 구분

국회법 제150조에 따르면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의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또한 국회법과 국회방청규칙은 방청권 점검, 방청인 신체검사, 비공개회의 시 퇴장, 방청석 소란 시 퇴장 조치를 정하고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회방청규칙에 따라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경위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경위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 O
국회법상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으므로, 경위는 의장의 명을 받아 그 퇴장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③ O
국회방청규칙에 따라 국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인이 경위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④ X
회의장 안에 있는 현행범인 의원이라도 경위가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는 없다. 이 선지는 현행범인 체포의 원칙과 회의장 안 의원에 대한 예외를 뒤바꾸었다.
틀린 표현: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⑤ O
국회방청규칙에 따라 방청인은 경위가 신체검사를 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함정은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일반 원칙만 떠올리게 하는 데 있다. 국회법은 회의장 안의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는 특별한 제한을 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회 안의 현행범인이라는 일반 상황과 회의장 안의 의원이라는 특별 상황을 나누어 판단한다. 전자는 체포 후 의장의 지시를 받고, 후자는 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방청인 관련 선지는 방청권 점검·신체검사·비공개회의 퇴장·소란 시 전원 퇴장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국회 안 현행범인은 체포 후 지시, 회의장 안 의원은 의장 명령 전 체포 금지이다.

NoteBase

4. 경호조직의 구성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호지휘 단일성의 원칙
② 경호기관 단위 작용성의 원칙
③ 경호체계 통일성의 원칙
④ 경호협력성의 원칙
⑤ 경호체계 다원성의 원칙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경호조직이 일관된 지휘와 유기적인 공동작용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성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호조직의 구성원칙은 지휘명령의 혼선을 막고, 각 경호기관이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며, 전체 경호체계의 통일성과 기관 간 협력성을 확보하려는 기준이다. 핵심은 지휘의 단일성, 경호기관의 단위 작용성, 경호체계의 통일성, 경호의 협력성이다. 여러 지휘·운영체계가 제각기 작동한다는 의미의 다원성은 이에 어긋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경호지휘 단일성의 원칙은 지휘권을 하나의 계통으로 통일하여 명령의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는 원칙이다.
② O — 경호기관 단위 작용성의 원칙은 각 경호기관이 독립된 기능 단위로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체 경호활동에 참여한다는 원칙이다.
③ O — 경호체계 통일성의 원칙은 여러 경호 요소와 활동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결합하여 일관되게 운용하는 원칙이다.
④ O — 경호협력성의 원칙은 관계 기관과 구성원이 정보·기능을 연계하고 상호 협조하여 공동의 경호목표를 달성하는 원칙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경호체계 다원성'이다. 다수의 지휘·운영체계가 제각기 작동하면 명령과 임무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경호조직의 구성원칙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경호체계 통일성의 원칙'이다.

오답 포인트

'다원성'이 여러 기관의 참여를 인정하는 말처럼 보여 '협력성'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 참여하더라도 전체 경호활동은 통일된 체계와 단일한 지휘 아래 협력해야 하므로, 다원성이 아니라 통일성이 원칙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용어가 명령의 혼선을 줄이고 조직을 하나로 움직이게 하는지를 판단한다. 단일 지휘, 기관별 단위 작용, 전체 체계의 통일, 기관 간 협력은 구성원칙에 맞지만 지휘·체계의 분산이나 다원화는 맞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지휘는 단일하게, 기관은 단위로, 체계는 통일되게, 활동은 협력적으로 이루어진다.

NoteBase

5. 경호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접경호는 노출성, 방벽성, 기동 및 유동성 등의 특성이 있다.
② 선발경호에서 안전대책 담당은 안전구역확보계획 검토, 건물의 안전성 여부, 상황별 비상대피로 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기만경호는 위해기도자로 하여금 행사 상황을 오판하도록 유도하며 인물·기동·장소·시간 기만 방법이 있다.
④ 비표는 리본, 배지, 명찰, 승차입장카드 등이 있으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선명하고 복잡하게, 종류는 최대화하는 것이 좋다.
⑤ 도보이동 시에는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거리 직선통로를 이용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경호 운용에서 근접경호·선발경호·기만경호·비표 운용·도보 이동의 기본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호 운용은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위해자의 관찰과 공격 기회를 줄이도록 인원, 이동, 출입통제 수단을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이다.
선발경호는 행사 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대책과 비상대피로 등을 마련하는 사전 예방 활동이다.
기만경호는 인물·기동·장소·시간에 관한 정보를 혼란시키거나 오판하게 하여 위해자의 공격 계획을 어렵게 하는 방법이다.
비표는 경호구역의 출입 자격을 빠르게 식별하는 표지이므로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며 종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근접경호는 경호대상자 가까이에서 수행되므로 외부에 드러나는 노출성이 있고, 인적 방벽을 형성하는 방벽성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기동성·유동성이 있다.
② O — 선발경호의 안전대책 담당은 행사 전에 안전구역 확보계획을 검토하고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며 상황별 비상대피로를 구성하는 등 예방적 안전조치를 수행한다.
③ O — 기만경호는 위해기도자가 행사 상황을 잘못 판단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며 인물·기동·장소·시간 기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복잡하게, 종류는 최대화'이다. 비표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며, 혼동과 오용을 막기 위해 종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⑤ O — 도보 이동에서는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과 거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짧고 직접적인 단거리 직선통로를 이용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보안을 강화하려면 비표를 복잡하고 다양하게 해야 할 것처럼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그러나 현장 비표의 목적은 암호화가 아니라 출입 자격의 신속한 식별이므로 단순·명확·최소화가 원칙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호 운용 수단은 위해 가능성과 노출 시간을 줄이고 현장 판단은 빠르게 만드는 방향이 원칙이다. 따라서 통로는 짧고 직접적으로, 비표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종류는 적게 운용하는 설명을 옳은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비표는 단순·명확·최소, 도보 통로는 단거리·직선이다.

NoteBase

6. 경호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사준비 등의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결정된 상황 하의 경호수준은 2(B)급 경호라고 할 수 있다.

② 현충일, 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에 참석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 수준은 1(A)급 경호에 해당된다.

③ 경호의 대상에 따른 구분으로 국왕, 대통령, 외국원수 등은 갑(A)호에 해당된다.

④ 행사장 주변에 경호장비 등을 배치하여 인적·물적·자연적 위해요소를 통제하는 활동은 간접경호에 해당된다.

⑤ 공식경호행사를 마치고 귀가 중 코스를 변경하여 예정에 없던 행사장을 방문할 때의 경호는 비공식경호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경호를 수준, 대상, 행사의 성격, 직·간접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각 분류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호 수준은 행사의 사전 준비 정도와 경호대상자의 등급 등을 기준으로 1(A)급·2(B)급·3(C)급으로 구분한다.
경호 대상에 따른 갑(A)호·을(B)호 등의 구분과는 기준이 다르다.
공식경호는 사전에 통보·협의된 공식 일정에 대한 경호이고, 비공식경호는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비공식·돌발 일정에 대한 경호이다.
직접경호는 행사장에 인원과 장비를 배치하여 인적·물적·자연적 위해요소를 예방·통제하는 활동이고, 간접경호는 정보 수집·분석, 계획 수립, 사전 준비와 안전대책 등 현장 경호를 지원하는 활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행사 준비의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결정된 상황에서 실시하는 경호는 경호 수준에 따른 2(B)급 경호에 해당한다.
② O — 현충일·광복절과 같은 국경일 행사에 참석하는 대통령의 경호는 사전에 계획되고 노출된 국가원수급 행사이므로 1(A)급 경호에 해당한다.
③ O — 국왕, 대통령, 외국 원수 등 국가원수급 인물은 경호 대상에 따른 구분에서 갑(A)호에 해당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간접경호'이다. 행사장 주변에 경호장비 등을 배치하여 인적·물적·자연적 위해요소를 직접 통제하는 활동은 '직접경호'이다. 간접경호는 정보 수집·분석, 계획 수립, 사전 준비 등 지원 활동을 뜻한다.
⑤ O — 공식경호행사를 마친 뒤 이동 중 사전에 없던 행사장을 방문하도록 일정을 바꾼 경우, 그 돌발 방문에 대한 경호는 비공식경호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행사장 주변'이라는 표현만 보고 간접경호로 오인하기 쉽다. 직·간접 여부는 경호대상자와의 거리보다 위해요소를 현장에서 인원·장비로 직접 통제하는지, 정보·계획 등으로 지원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1(A)급·2(B)급은 경호 수준의 분류이고, 갑(A)호·을(B)호는 경호 대상의 분류이므로 같은 알파벳 표기에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먼저 분류 기준을 찾는다. '갑자기 결정'은 2(B)급, '국가원수급'은 갑(A)호 또는 사전 계획 행사라면 1(A)급, '사전 통보 없는 돌발 일정'은 비공식경호, '현장에 인원·장비를 배치해 위해요소 통제'는 직접경호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현장 배치·통제는 직접경호, 정보·계획·지원은 간접경호이다. 갑작스러운 행사는 2(B)급, 사전 협의 없는 일정은 비공식경호이다.

NoteBase

7. 건물내부의 방을 검측할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① 천장검측 → 천장내부검측 → 벽검측 → 바닥검측
② 천장내부검측 → 천장검측 → 벽검측 → 바닥검측
③ 바닥검측 → 벽검측 → 천장검측 → 천장내부검측
④ 천장내부검측 → 바닥검측 → 천장검측 → 벽검측
⑤ 바닥검측 → 천장내부검측 → 벽검측 → 천장검측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건물 내부의 방을 검측할 때 누락 없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진행하는 기본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바닥검측 — 방의 가장 낮은 면부터 확인한다.
2. 벽검측 — 바닥에 이어 방의 측면을 확인한다.
3. 천장검측 — 벽 다음으로 위쪽 면인 천장을 확인한다.
4. 천장내부검측 — 천장 표면을 확인한 뒤 그 내부 공간을 확인한다.

왜 이 순서인가: 바닥에서 벽, 천장으로 높이를 올려 가며 검측한 다음 천장 내부로 들어가야 검측 구역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천장검측부터 시작하고 바닥검측을 마지막에 둔 점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바닥검측 → 벽검측 → 천장검측 → 천장내부검측 순서이다.

② X — 천장내부검측을 천장검측보다 먼저 둔 점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바닥과 벽을 확인한 뒤 천장검측을 하고, 마지막에 천장내부검측을 한다.

③ O — 바닥검측 → 벽검측 → 천장검측 → 천장내부검측으로, 아래쪽에서 위쪽 및 내부로 진행하는 올바른 순서이다.

④ X — 천장내부검측부터 시작하고 바닥검측을 그다음에 둔 점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바닥검측을 먼저 하고 벽검측과 천장검측을 거쳐 천장내부검측을 마지막에 한다.

⑤ X — 바닥검측 다음에 곧바로 천장내부검측을 하고 천장검측을 마지막에 둔 점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바닥검측 → 벽검측 → 천장검측 → 천장내부검측 순서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천장검측과 천장내부검측의 선후관계를 바꾸기 쉽다. 천장 내부는 천장 표면보다 먼저 검측하는 단계가 아니며, 바닥과 벽 및 천장을 차례로 확인한 뒤 마지막에 검측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방 검측 순서는 공간의 높이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바닥에서 시작해 측면인 벽, 위쪽 면인 천장으로 이동한 다음 천장 내부로 들어가는 흐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바닥 → 벽 → 천장 → 천장 내부, 즉 아래에서 위로 간 뒤 내부를 확인한다.

NoteBase

8. 다음 <보기>의 국가중요시설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보 기>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① 대검찰청
② 대법원
③ 국방부
④ 한국은행본점
⑤ 국회의사당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국가중요시설의 가급·나급·다급 분류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보기>의 '광범위한 지역', '결정적인 영향'이라는 표현이 가급의 기준임을 파악하고 각 시설의 등급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국가중요시설은 적에게 점령·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다. 중요성과 영향 범위에 따라 가급·나급·다급으로 나뉜다.

핵심 구분

가급은 기능 마비 시 광범위한 지역에서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나급은 일부 지역에서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따라서 <보기>는 가급을 설명하며, 대검찰청은 나급이므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대검찰청은 국가중요시설이지만 <보기>가 설명하는 가급이 아니라 나급에 해당한다.
- 틀린 표현: 대검찰청이 <보기>의 가급 시설에 속한다.
- 올바른 표현: 대검찰청은 나급 국가중요시설에 속한다.

② O
- 대법원은 <보기>가 설명하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한다.

③ O
- 국방부는 <보기>가 설명하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한다.

④ O
- 한국은행 본점은 <보기>가 설명하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한다.

⑤ O
- 국회의사당은 <보기>가 설명하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가'와 '가급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는가'를 혼동하기 쉽다. ① 대검찰청도 국가중요시설이지만 등급은 나급이므로, 가급의 정의를 제시한 <보기>에는 속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류 기준의 영향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광범위한 지역·결정적인 영향'은 가급, '일부 지역·중대한 영향'은 나급, '제한된 지역·단기간·상당한 영향'은 다급으로 판단한다. 그다음 시설명과 등급을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가급의 핵심 시설은 국회의사당·대법원·국방부·한국은행 본점이고, 대검찰청은 나급이다.

NoteBase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가스총"이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5번

쟁점

이 문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분사하는 기기의 법정 명칭이 '가스총'이 아니라 '분사기'라는 점이다.

용어 풀이

분사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핵심 구분

현행법 제2조 제1항은 총포, 제2항은 도검, 제4항은 분사기, 제5항은 전자충격기, 제6항은 석궁을 각각 정의한다.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분사하는 기기는 제4항의 '분사기'이고, 이를 '가스총'의 정의라고 바꾸면 틀린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총포에는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 및 총포신·기관부 등의 부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② O
도검은 원칙적으로 칼날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이며, 15센티미터 미만이어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포함된다.

③ O
석궁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함으로써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④ O
전자충격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⑤ X
설명된 기기의 기능 자체는 제2조 제4항의 내용과 부합하지만, 법정 명칭을 '가스총'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이 법에서 '가스총'이란
올바른 표현: 이 법에서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오답 포인트

⑤는 뒤의 기능 설명이 자연스러워 맞는 선지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정의 문제에서는 기능뿐 아니라 법률이 붙인 정확한 용어까지 일치해야 하며, 해당 정의의 주어는 '가스총'이 아니라 '분사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상 정의를 묻는 선지는 '용어'와 '정의 내용'을 한 쌍으로 대조한다. 최루·질식 작용제의 분사는 분사기, 전류의 방류는 전자충격기,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한 화살 등의 발사는 석궁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작용제는 분사기, 전류는 전자충격기, 화살은 석궁이다.

NoteBase

10. 경호작용의 원천적 지식을 생산·제공하는 것으로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를 사전에 수집·분석·예고함으로써 예방경호를 수행하는 업무는?

① 보안작용
② 경호정보작용
③ 안전대책작용
④ 안전점검작용
⑤ 안전유지작용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경호작용 가운데 취약요소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예고하여 예방경호의 판단자료를 생산·제공하는 작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호정보작용은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분석하여 필요한 판단·예고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예방경호작용이다.
경호보안작용은 경호 관련 인원·문서·시설·지역·자재·통신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우고 보안을 유지하는 작용이다.
안전대책작용은 행사장 안팎의 위해요소 제거, 안전점검·안전검사·검식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작용이다.
안전점검은 폭발물 등 위해물을 탐지·제거하고, 안전유지는 점검과 검사가 끝난 안전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관리·통제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보안작용은 경호 관련 인원·문서·시설·지역·자재·통신 등을 위해기도자로부터 보호하고 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작용이다. 틀린 표현은 '보안작용'이며, 제시된 설명에 맞는 말은 '경호정보작용'이다.
② O — 경호정보작용은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를 미리 수집·분석·예고하여 예방경호에 필요한 원천적 지식을 생산·제공한다.
③ X — 안전대책작용은 취약요소에 대한 대책 수립과 안전점검·안전검사·검식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안전작용이다. 틀린 표현은 '안전대책작용'이며, 정보의 수집·분석·예고를 담당하는 것은 '경호정보작용'이다.
④ X — 안전점검작용은 폭발물 등 각종 위해물의 설치·매설 여부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작용이다. 틀린 표현은 '안전점검작용'이며, 취약요소를 사전에 수집·분석·예고하는 것은 '경호정보작용'이다.
⑤ X — 안전유지작용은 안전점검과 안전검사가 완료된 상태가 경호 종료 시까지 유지되도록 관리·통제하는 작용이다. 틀린 표현은 '안전유지작용'이며, 원천적 경호지식을 생산·제공하는 것은 '경호정보작용'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가 위해를 사전에 막는 활동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결정적 표현은 '수집·분석·예고'와 '원천적 지식의 생산·제공'이다. 이는 현장에서 위해물을 제거하거나 안전상태를 통제하는 단계가 아니라 경호정보를 만드는 단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집·분석·판단·예고·전파'가 중심이면 경호정보작용, '인원·문서·시설 등의 비밀과 노출 방지'이면 경호보안작용, '위해요소 제거와 점검·검사·검식'이면 안전대책작용으로 판단한다. 안전대책의 세부 단계에서는 위해물 탐지·제거가 안전점검, 점검 후 상태의 관리·통제가 안전유지이다.

암기 포인트

정보는 수집·분석·예고, 보안은 보호·비노출, 점검은 탐지·제거, 유지는 관리·통제이다.

NoteBase

11. 테러의 수행 단계로 옳은 것은?

① 정보수집단계 → 조직화단계 → 계획수립단계 → 공격준비단계 → 실행단계
② 계획수립단계 → 정보수집단계 → 조직화단계 → 공격준비단계 → 실행단계
③ 정보수집단계 → 계획수립단계 → 공격준비단계 → 조직화단계 → 실행단계
④ 첩보수집단계 → 정보처리단계 → 공격준비단계 → 실행단계 → 조직화단계
⑤ 정보수집단계 → 계획수립단계 → 조직화단계 → 공격준비단계 → 실행단계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테러의 수행 단계가 정보수집단계 → 계획수립단계 → 조직화단계 → 공격준비단계 → 실행단계의 순서로 진행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정보수집단계 — 공격 대상과 주변 여건, 경계 상태 등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단계이다.
2. 계획수립단계 —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목표, 방법, 시기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정하는 단계이다.
3. 조직화단계 — 수립된 계획을 실행할 인원과 역할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4. 공격준비단계 — 조직과 역할에 따라 장비, 자금, 이동 수단 등 실행에 필요한 요소를 마련하고 점검하는 단계이다.
5. 실행단계 — 준비된 계획에 따라 실제 공격을 감행하는 단계이다.

왜 이 순서인가: 수집된 정보가 계획의 근거가 되고, 계획이 정해져야 그에 맞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된 조직이 공격 준비를 마친 뒤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정보수집단계 다음에 조직화단계를 둔 것이 틀리다. 조직은 수립된 계획을 실행하도록 구성되므로 계획수립단계가 조직화단계보다 먼저이다. 올바르게는 정보수집단계 → 계획수립단계 → 조직화단계 → 공격준비단계 → 실행단계이다.
② X — 계획수립단계를 정보수집단계보다 먼저 둔 것이 틀리다. 계획은 먼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세우므로 정보수집단계가 계획수립단계보다 먼저이다. 올바르게는 정보수집단계 → 계획수립단계 → 조직화단계 → 공격준비단계 → 실행단계이다.
③ X — 공격준비단계를 조직화단계보다 먼저 둔 것이 틀리다. 계획에 맞춰 조직과 역할을 구성한 다음 그 조직이 공격을 준비한다. 올바르게는 정보수집단계 → 계획수립단계 → 조직화단계 → 공격준비단계 → 실행단계이다.
④ X — '정보처리단계'를 별도의 수행 단계로 넣고 실행단계 뒤에 조직화단계를 둔 것이 틀리다. 조직화는 실행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시된 수행 순서에서는 정보수집 뒤 바로 계획을 수립한다. 올바르게는 정보수집단계 → 계획수립단계 → 조직화단계 → 공격준비단계 → 실행단계이다.
⑤ O —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을 구성한 뒤 공격을 준비하여 실행하는 올바른 순서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계획수립과 조직화의 선후관계이다. 조직을 먼저 만들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한 정보로 계획을 세운 뒤 그 계획에 맞게 조직과 역할을 구성한다. 또한 공격준비는 조직화 뒤, 실행은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 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단계의 산출물이 다음 단계의 입력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정보가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있어야 조직을 구성하며, 조직이 있어야 공격을 준비하고, 준비가 끝나야 실행한다.

암기 포인트

정보 → 계획 → 조직 → 준비 → 실행의 순서로 기억한다.

NoteBase

12. 우발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류탄 투척 공격을 받았을 때는 함몰형 대형이 적합하다.
② 범인이 총으로 공격 시 경호원은 자신의 신체와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범인을 포위하는 방어적 원형대형을 편성한다.
③ 제2의 공격으로부터 경호대상자를 안전지대로 이탈시키기 위해 대피대형을 형성한다.
④ 대피 시 경호대상자에 대한 예의를 무시하더라도 과감하게 행동한다.
⑤ 범인을 제압할 때 범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경호원이 대적해야 한다는 것은 촉수거리의 원칙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우발상황에서 위해 유형에 맞는 방호대형과 대응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방어적 원형대형이 누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지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우발상황 대응은 경호대상자의 방호와 안전지대 이탈을 최우선으로 하는 즉각적 조치이다. 함몰형 대형은 수류탄·폭발물 공격 때 경호대상자를 낮게 밀착시키고 경호원이 위를 덮어 폭발 피해를 줄이는 대형이다. 방어적 원형대형은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경호원들이 둘러싸 방호벽을 만드는 대형이며, 범인을 포위하는 체포대형이 아니다. 촉수거리의 원칙은 위해자와 가장 가까운 경호원이 즉시 대응한다는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수류탄 투척과 같은 폭발성 공격에서는 경호대상자를 지면 쪽으로 낮추고 경호원들이 덮어 보호하는 함몰형 대형이 적합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범인을 포위하는 방어적 원형대형'이다. 방어적 원형대형은 범인이 아니라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형성하여 총격 방향으로부터 방호하고 이탈을 돕는 대형이다. 올바르게는 '경호원은 자세를 낮추어 피격 면적을 줄이고, 경호대상자를 둘러싸는 방어적 원형대형을 편성한다'이다.
③ O — 제2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경호대상자를 안전지대로 이탈시키려면 이동 중에도 방호가 유지되는 대피대형을 형성한다.
④ O — 대피 상황에서는 의전이나 예의보다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가 우선이므로 과감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한다.
⑤ O — 위해자를 제압할 때 그와 가장 가까운 경호원이 즉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촉수거리의 원칙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총격 대응 자세 자체보다 '범인을 포위한다'는 목적어가 함정이다. 방어적 원형대형의 중심은 위해자가 아니라 경호대상자이며, 범인 제압과 경호대상자 방호를 혼동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위해 유형과 대형의 보호 대상을 함께 확인한다. 폭발물은 함몰형, 총격 시 방호는 경호대상자 중심의 방어적 원형, 안전지대 이동은 대피대형으로 판단한다. 제압 담당은 위해자와 가장 가까운 경호원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폭발물은 함몰, 총격 방호는 대상자 중심 원형, 이동은 대피, 제압은 촉수거리이다.

NoteBase

13. 다음 <보기>는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 기>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ㄱ) 이하의 징역 또는 (ㄴ)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	ㄴ
①	3년	5백만
②	5년	1천만
③	5년	2천만
④	7년	1천만
⑤	7년	2천만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국회법」 제166조 제1항의 국회 회의 방해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기본적 폭력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가중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국회 회의 방해죄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법이 정한 폭력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핵심 구분

「국회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재물손괴 등 제2항의 가중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3년 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은 모두 틀리다. 올바른 표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② O — 제166조 제1항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X — 5년 이하의 징역은 맞지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틀리다. 올바른 벌금 상한은 1천만원이다.
④ X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맞지만 7년 이하의 징역이 틀리다. 올바른 징역 상한은 5년이다.
⑤ X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166조 제2항의 가중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다. 보기의 제1항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오답 포인트

제1항의 기본 구성요건과 제2항의 가중 구성요건을 혼동하면 ⑤를 고르기 쉽다. 보기의 폭행·체포·감금·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는 제1항에 열거된 행위이므로 5년·1천만원을 적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위 유형을 먼저 확인한다. 기본적인 폭력행위와 그에 따른 출입·공무 집행 방해이면 제1항의 5년·1천만원, 상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 등 가중 행위이면 제2항의 7년·2천만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국회 회의 방해죄는 기본 5년·1천만원, 가중 7년·2천만원이다.

NoteBase

14. 경호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호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경호공무원은 직업의 특성상 때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경호공무원은 대통령을 보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개입이 보장된다.
④ 경호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⑤ 경호공무원은 영리적인 업무를 위해 직장을 이탈할 수 있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경호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비밀 엄수, 직권 남용 금지, 정치 운동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 제한, 직장 이탈 금지 의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경호업무의 특수성이 일반적인 공무원 복무의무를 완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비밀 엄수의 의무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이며, 퇴직 후에도 계속된다.
직권 남용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본래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핵심 구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소속공무원에게 퇴직 후까지 포함한 비밀 엄수 의무를 부과하고 직권 남용을 금지한다.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므로, 경호공무원도 정치 운동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 제한,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경호처 소속공무원은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X
- 경호업무의 특수성도 직권 남용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법률은 소속공무원의 직권 남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 틀린 표현: '직권을 남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올바른 표현: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X
- 경호공무원도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 금지 의무를 부담하므로,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개입이 보장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어느 정도 정치적 개입이 보장된다'
- 올바른 표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법이 금지하는 정치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④ X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영리 목적이 아닌 다른 직무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할 수 없다.
- 틀린 표현: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올바른 표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의 겸직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⑤ X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업무 효율성만으로 자유로운 이탈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틀린 표현: '업무를 위해 직장을 이탈할 수 있다'
- 올바른 표현: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직장을 이탈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③에서 경호업무의 특수성과 대통령 근접 근무를 특권으로 오해하기 쉽다. 특수한 권한이 있더라도 직권 남용과 정치적 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④는 영리 업무 금지와 허가를 전제로 한 비영리 겸직을 혼동하게 하고, ⑤는 업무상 필요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를 혼동하게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선지는 먼저 특별법상 비밀 엄수와 직권 남용 금지를 확인하고, 그 밖의 사항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치 운동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 제한, 직장 이탈 금지 원칙으로 판단한다. '직무 특성상 허용된다'는 표현은 명시적 예외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경호공무원도 공무원이다. 비밀은 퇴직 후까지, 직권 남용·정치 개입·영리 업무·무단이탈은 금지된다.

NoteBase

15. 경호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경호대상자에 대해서 인위적·자연발생적 위해 등으로부터 그 신변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작용을 말한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경호주체가 국가, 민간에 관계없이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경호의 개념을 본질적, 이론적인 입장에서 이해한 것이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학문적 측면에서 고찰된 개념이다.

⑤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실정법에 근거한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과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을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 경호주체가 국가기관인지 민간인지와 관계없이 인위적·자연발생적 위해로부터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모든 작용을 뜻한다. 학문적·본질적·이론적 관점의 개념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 실정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현실의 경호기관과 그 기관의 활동을 기준으로 정립한 개념이다.
핵심 대비: 실질적 의미는 보호작용의 본질과 내용, 형식적 의미는 실정법과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인위적 위해뿐 아니라 자연발생적 위해로부터도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는 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호에 포함된다.
② O —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 국가·민간이라는 경호주체의 구분과 관계없이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형식적 의미'이다. 경호를 본질적·이론적 입장에서 이해한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이며, 올바르게는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경호의 개념을 본질적·이론적 입장에서 이해한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
④ O — 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경호활동의 본질과 내용을 탐구하는 학문적 측면에서 고찰된 개념이다.
⑤ O — 형식적 의미의 경호개념은 실정법에 근거하여 실제로 설치·운영되는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한 개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본질적·이론적'이라는 실질적 의미의 특징 앞에 '형식적 의미'를 붙여 두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형식적'이라는 말만 보고 이론적 형식과 연결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본질·내용·학문·이론·주체 불문·모든 보호활동'이 나오면 실질적 의미로, '실정법·실제 경호기관'이 나오면 형식적 의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실질은 본질과 보호활동, 형식은 실정법과 경호기관이다.

NoteBase

16. 3중 경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중 경호는 1선(안전구역), 2선(경비구역), 3선(경계구역)으로 구분한다.
② 1선(권총 유효사거리), 2선(소총사거리), 3선(소구경 직사화기)의 거리를 고려한 개념이다.
③ 3중 경호이론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에서 체계화되었다.
④ 1선 내에서는 경호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인원은 출입이 금지된다.
⑤ 영국의 3중 경호는 상대적으로 3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3중 경호의 세 방어선이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각 선의 통제 원칙과 영국식 운용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3중 경호는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중첩하여 위해요소가 안쪽으로 접근할수록 단계적으로 탐지·차단하는 경호 원칙이다. 안쪽부터 1선은 안전구역, 2선은 경비구역, 3선은 경계구역이며, 무기의 유효사거리로 세 선을 나누는 개념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3중 경호는 안쪽부터 1선인 안전구역, 2선인 경비구역, 3선인 경계구역으로 구분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권총 유효사거리·소총사거리·소구경 직사화기의 거리를 고려한 개념'이라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경호상 중요도와 접근 통제의 정도에 따라 안전구역·경비구역·경계구역을 중첩하여 설정하는 개념이다.
③ O — 3중 경호 이론은 영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에서 체계화된 것으로 설명된다.
④ O — 1선은 경호대상자와 가장 가까운 안전구역이므로 경호원의 확인을 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⑤ O — 영국식 3중 경호는 위해요소를 외곽에서 미리 발견하고 차단하는 예방적 통제를 중시하므로 상대적으로 외곽인 3선에 주안점을 둔다.

오답 포인트

②는 방어선의 범위를 무기별 사거리와 연결해 그럴듯하게 만든 선지이다. 3중 경호의 핵심은 무기의 사거리 분류가 아니라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구역별 중첩 방어와 단계적 출입 통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의 명칭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1선 안전구역, 2선 경비구역, 3선 경계구역의 순서로 확인한다. 이어 선지의 구분 기준이 경호대상자 중심의 단계적 통제인지, 무기 사거리처럼 별개의 기준을 끌어온 것인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안쪽부터 1안전·2경비·3경계이며, 3중 경호는 사거리 구분이 아니라 중첩 방어이다.

NoteBase

17. 국가 의전서열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① 국무총리 - 국회의장 - 헌법재판소장 - 대법원장
② 국회의장 - 국무총리 - 헌법재판소장 - 대법원장
③ 국무총리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④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⑤ 국회의장 - 대법원장 - 국무총리 - 헌법재판소장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요 국가기관장과 국무총리의 국가 의전서열을 바르게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올바른 순서

대통령 다음의 주요 의전서열은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순이다.

국회의장이 네 직위 중 가장 앞서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그 뒤를 차례로 이으며, 국무총리는 이들 다음에 놓인다. 의전서열은 국가행사에서 예우와 좌석 배치 등의 선후를 정하는 순서이지, 기관 사이의 지휘·명령 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국무총리를 국회의장보다 앞에 둔 부분부터 틀렸고, 헌법재판소장을 대법원장보다 앞에 둔 것도 틀렸다. 올바르게는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순이다.

② X — 국회의장 다음에 국무총리를 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국회의장 다음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차례로 오고 국무총리가 그 뒤에 온다.

③ X — 국무총리를 국회의장보다 앞에 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순이다.

④ O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로 국가 의전서열이 바르게 나열되어 있다.

⑤ X —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의 순서를 뒤바꾼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순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국무총리를 행정부의 주요 직위라는 이유로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보다 앞에 놓는 것이 대표적인 함정이다. 또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순서를 바꾸거나, ⑤처럼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의 순서를 뒤바꾸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통령이 보기에서 제외되었는지 먼저 확인한 뒤,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의 고정된 상대 순서와 각 선지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대통령 다음 네 자리의 핵심 순서는 '국회-대법-헌재-총리'이다.

NoteBase

18. 위해기도자들의 사전 행동적 징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총이나 무기를 은닉하고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무기를 확인하려는 행동을 취한다.
② 날씨가 추운데도 코트 앞단추를 풀고 있는 사람을 주의한다.
③ 위해기도자들은 빠른 공격을 위해 맨 앞줄에 서려는 경향이 있다.
④ 양손이 모두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주의한다.
⑤ 행사 직전에 허겁지겁 도착하여 입장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유의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위해기도자의 흉기 소지, 복장, 손의 노출 여부, 위치 선정, 도착 시점에 나타나는 사전 행동징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위해기도자의 사전 행동징후는 위해 의도나 흉기 소지, 긴장·경계 심리 등이 몸짓, 복장, 자리 선택, 행사장 접근 방식에 드러나는 관찰 가능한 이상 행동이다. 위해기도자는 공격 가능성뿐 아니라 발각 회피와 도주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므로, 단순히 빠른 공격을 위해 맨 앞줄에 서려 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 권총이나 무기를 은닉한 사람은 무기의 위치와 상태가 신경 쓰여 무의식적으로 손을 대거나 확인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징후이다.
② O — 추운 날씨에 코트 앞단추를 풀고 있으면 은닉한 무기에 빠르게 손을 댈 수 있으므로 복장과 기온이 어울리지 않는 이상 행동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빠른 공격을 위해 맨 앞줄에 서려는 경향'이다. 위해기도자는 경호원의 감시를 피하면서 공격 후 이탈하기 쉬운 위치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맨 앞줄 선호를 일반적인 사전 행동징후로 볼 수 없다.
④ O — 양손이 모두 가려져 보이지 않으면 손에 흉기나 공격 수단을 숨겼는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할 징후이다.
⑤ O — 행사 직전에 허겁지겁 도착해 입장하려는 행동은 충분한 확인이나 검색을 피하려는 시도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징후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빠른 공격'이라는 말만 보면 맨 앞줄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위해기도자의 자리 선택에는 공격 거리뿐 아니라 감시 회피와 공격 후 이탈 가능성도 작용하므로, 맨 앞줄 선호라고 단정한 부분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복장·손동작·입장 행태가 은닉 무기 확인이나 검색 회피와 연결되는지는 사전 행동징후로 판단한다. 위치 관련 선지는 공격 접근성만 보지 않고 감시 회피와 도주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사전 행동징후는 무기 확인, 부자연스러운 복장, 가려진 손, 촉박한 입장이다. 자리 선택은 맨 앞줄 고정이 아니라 감시 회피와 이탈 가능성이 핵심이다.

NoteBase

1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③ "대테러활동"이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④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
⑤ 테러경보 발령 등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관계 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정답 5번

쟁점

이 문제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적용 관계, 주요 용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대테러센터의 설치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대테러센터의 소속 기관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대테러활동 = 테러 관련 정보 수집, 테러위험인물 관리,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 보호, 국제행사 안전확보, 테러위협 대응과 무력진압 등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이다.

핵심 구분

현행법 제2조는 테러단체와 대테러활동을 정의하고, 제4조는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제5조의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제6조의 대테러센터는 그 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한다. 대테러센터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이 법 제4조는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므로 옳다.

② O
이 법 제2조 제2호의 '테러단체'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므로 옳다.

③ O
이 법 제2조 제6호의 '대테러활동'에는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이 포함되므로 옳다.

④ O
이 법 제5조 제1항은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므로 옳다.

⑤ X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대테러센터를 구성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대통령 소속'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틀린 표현: 대통령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올바른 표현: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오답 포인트

⑤는 대테러센터의 구성원을 관계기관 공무원이라고 맞게 제시한 뒤 소속만 '대통령'으로 바꾼 선지이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도 국무총리이고 대테러센터 역시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점을 함께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테러방지법의 조직 문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센터의 기능을 먼저 나눈 뒤, 대테러센터의 소속이 '국무총리'인지 확인한다. 선지의 업무 내용이 맞더라도 소속 기관을 바꾸면 틀린 선지가 된다.

암기 포인트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는 실무를 수행한다.

NoteBase

20. 다음 <보기>의 검측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선을 의심하고 추적한다.

ㄴ. 책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ㄷ. 통로에서는 양측을 중점 검측하고 높은 곳보다는 아래를, 의심되는 곳은 반복해서 실시한다.

ㄹ. 검측은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실시한다.

ㅁ. 검측은 은밀하게 실시한다.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ㄱ, ㄷ, ㄹ, ㅁ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검측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탐색 방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검측은 위해물이나 이상 징후가 숨겨졌을 가능성을 전제로 대상 구역을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이다. 선은 의심하여 추적하고, 책임구역을 명확히 나누며, 아래에서 위로·우에서 좌로·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진행한다. 통로는 양측을 한꺼번에 보지 않고 한쪽씩 검측하며, 의심되는 곳은 반복하여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ㅁ은 모두 옳다. 연결된 선은 위해물과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심하여 추적하고, 검측은 노출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실시한다.

② X — ㄴ과 ㄹ은 모두 방향이 잘못되었다. ㄴ은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우에서 좌로'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다. ㄹ은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 ㅁ이다.

③ X — ㄹ이 잘못되었다. 검측은 먼 곳부터 다가오는 방식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ㄱ, ㄹ, ㅁ이 아니라 ㄱ, ㅁ이 옳다.

④ X — ㄴ과 ㄷ이 잘못되었다. ㄴ의 올바른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우에서 좌로이다. ㄷ의 '통로에서는 양측을 중점 검측한다'는 표현은 잘못이며, 통로는 한쪽씩 검측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ㄴ, ㄷ, ㅁ이 아니라 ㄱ, ㅁ이 옳다.

⑤ X — ㄷ과 ㄹ이 잘못되었다. 통로는 양측을 한꺼번에 중점 검측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씩 검측하고, 검측 범위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넓힌다. 따라서 ㄱ, ㄷ, ㄹ, ㅁ이 아니라 ㄱ, ㅁ이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ㄴ과 ㄹ은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방향을 제시해 혼동을 유도한다. 검측의 기준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우에서 좌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이다. 또한 ㄷ은 '양측'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항목에서 방향어와 범위어를 확인한다. '아래→위, 우→좌, 가까운 곳→먼 곳, 통로는 한쪽씩'에 맞으면 옳고, 반대 방향이나 통로 양측 동시 검측이면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선의 추적, 의심 장소의 반복 확인, 은밀한 실시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검측은 선을 추적하고 은밀하게, 방향은 아래→위·우→좌·가까운 곳→먼 곳, 통로는 한쪽씩 실시한다.

NoteBase